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세칙

[2021.3.1. 시행]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2019.11.11. 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유치원, 특수학교, 각종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병설유치원 교직원은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를 적용한다.

제3조(학교자치기구 구성)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자치기구(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 구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운영의 원칙)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자치기구(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제5조(운영규정, 회칙) 학교자치기구 운영규정이나 회칙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학생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안내한 학생자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학부모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1. 명칭
2. 목적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학생회 협의사항) ① 조례 제4조2항4호의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교복 및 체육복
4.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5. 학교급식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② 조례 제4조2항6호에서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생회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제7조(교사회 협의사항) 조례 제6조2항1호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 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사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휴업일 근무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교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직원회 협의사항) 조례 제7조2항1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 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원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직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직원회 협의사항) 조례 제8조6항5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직원 업무분장에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교직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자치기구 협의회실
2. 학교자치기구에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1조(학교 자율 운영) 이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자치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자치기구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